[서초자이르네]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서초자이르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관람을 사이버 홍보관으로(http://www.seocho-xirene.com) 대체하여 운영 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은 홍보관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홍보관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서초자이르네 분양 상담전화(☎1522-662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분양승인서류 2020.09.22. 접수일 기준임)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0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은「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은「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08.)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다른 단지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cho-xiren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및 대출규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일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8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 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0.10.27.)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은「주택법」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 당 1건으로 강화

■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공급신청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일반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반1순위		일반 2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거주)	당첨자발표	서류제출기간 (일반/당첨자)	계약체결
	일반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 인천시 거주)				
일 정	2020.10.19.(월)	2020.10.20.(화)	2020.10.21.(수)	2020.10.27.(화)	2020.10.29.(목)~2020.11.06.(금)	2020.11.09.(월)~2020.11.11.(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홍보관 방문 (9일간/10:00~16:00)	홍보관 방문 (3일간/10:00~16:00)
장 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홍보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 래미안서초유니빌 201호 (서초동 1445-4)	• 홍보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 래미안서초유니빌 201호 (서초동 1445-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46051호(2020.10.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65번지 외 8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5~14층 2개동 총 67세대 중 일반공급 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비고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0001124	01	050.8400A	50A	50.8400	15.3712	66.2112	38.6374	104.8486	29.48	4	4	1	
		02	050.6300B	50B	50.6300	15.8758	66.5058	38.4779	104.9837	29.36	6	6	1	
		03	050.9500C	50C	50.9500	15.3749	66.3249	38.7211	105.0460	29.55	7	7	1	
		04	059.6700A	59A	59.6700	17.8867	77.5567	45.3481	122.9048	34.60	4	4	1	
		05	059.6900B	59B	59.6900	17.8110	77.5010	45.3633	122.8643	34.61	1	1	0	
		06	059.9700C	59C	59.9700	17.7214	77.6914	45.5761	123.2675	34.78	2	2	1	
		07	069.7900A	69A	69.7900	20.5505	90.3405	53.0391	143.3796	40.47	1	1	0	
		08	069.1800B	69B	69.1800	20.1889	89.3689	52.5756	141.9445	40.12	10	10	1	
	합 계										35	35	6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하층으로 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자리에서 버림 처리)되고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	층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 도 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2021.02.01	2021.04.30	2021.07.30	2021.11.01	2022.01.31	2022.05.02	입주예정일
50.8400 (50A)	102동 (5호)	1층	1	451,860,000	183,280,000	635,140,000	63,514,000	63,514,000	63,514,000	63,514,000	63,514,000	63,514,000	63,514,000	190,542,000
		2층	1	451,860,000	196,280,000	648,140,000	64,814,000	64,814,000	64,814,000	64,814,000	64,814,000	64,814,000	64,814,000	194,442,000
		3층	1	451,860,000	210,280,000	662,140,000	66,214,000	66,214,000	66,214,000	66,214,000	66,214,000	66,214,000	66,214,000	198,642,000
		4층	1	451,860,000	216,280,000	668,140,000	66,814,000	66,814,000	66,814,000	66,814,000	66,814,000	66,814,000	66,814,000	200,442,000
50.6300 (50B)	102동 (4호)	1층	1	449,990,000	181,150,000	631,140,000	63,114,000	63,114,000	63,114,000	63,114,000	63,114,000	63,114,000	63,114,000	189,342,000
		2층	1	449,990,000	195,150,000	645,140,000	64,514,000	64,514,000	64,514,000	64,514,000	64,514,000	64,514,000	64,514,000	193,542,000
		3층	1	449,990,000	208,150,000	658,140,000	65,814,000	65,814,000	65,814,000	65,814,000	65,814,000	65,814,000	65,814,000	197,442,000
		4층	1	449,990,000	215,150,000	665,140,000	66,514,000	66,514,000	66,514,000	66,514,000	66,514,000	66,514,000	66,514,000	199,542,000
		5층	1	449,990,000	221,150,000	671,140,000	67,114,000	67,114,000	67,114,000	67,114,000	67,114,000	67,114,000	67,114,000	201,342,000
		6층	1	449,990,000	228,150,000	678,140,000	67,814,000	67,814,000	67,814,000	67,814,000	67,814,000	67,814,000	67,814,000	203,442,000
50.9500 (50C)	101동 (1호)	1층	1	452,840,000	177,300,000	630,140,000	63,014,000	63,014,000	63,014,000	63,014,000	63,014,000	63,014,000	63,014,000	189,042,000
		2층	1	452,840,000	190,300,000	643,140,000	64,314,000	64,314,000	64,314,000	64,314,000	64,314,000	64,314,000	64,314,000	192,942,000
		3층	1	452,840,000	203,300,000	656,140,000	65,614,000	65,614,000	65,614,000	65,614,000	65,614,000	65,614,000	65,614,000	196,842,000
		4층	1	452,840,000	210,300,000	663,140,000	66,314,000	66,314,000	66,314,000	66,314,000	66,314,000	66,314,000	66,314,000	198,942,000
		5층	1	452,840,000	217,300,000	670,140,000	67,014,000	67,014,000	67,014,000	67,014,000	67,014,000	67,014,000	67,014,000	201,042,000
		6층	1	452,840,000	230,300,000	683,140,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204,942,000
		7층	1	452,840,000	230,300,000	683,140,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68,314,000	204,942,000

59.6700 (59A)	101동 (2호)	1층	1	530,320,000	198,820,000	729,140,000	72,914,000	72,914,000	72,914,000	72,914,000	72,914,000	72,914,000	72,914,000	218,742,000
		2층	1	530,320,000	213,820,000	744,140,000	74,414,000	74,414,000	74,414,000	74,414,000	74,414,000	74,414,000	74,414,000	223,242,000
		3층	1	530,320,000	229,820,000	760,140,000	76,014,000	76,014,000	76,014,000	76,014,000	76,014,000	76,014,000	76,014,000	228,042,000
		4층	1	530,320,000	237,820,000	768,140,000	76,814,000	76,814,000	76,814,000	76,814,000	76,814,000	76,814,000	76,814,000	230,442,000
59.6900 (59B)	101동 (2호)	5층	1	530,500,000	244,640,000	775,140,000	77,514,000	77,514,000	77,514,000	77,514,000	77,514,000	77,514,000	77,514,000	232,542,000
59.9700 (59C)	101동 (3호)	2층	1	532,990,000	213,150,000	746,140,000	74,614,000	74,614,000	74,614,000	74,614,000	74,614,000	74,614,000	74,614,000	223,842,000
		3층	1	532,990,000	228,150,000	761,140,000	76,114,000	76,114,000	76,114,000	76,114,000	76,114,000	76,114,000	76,114,000	228,342,000
69.7900 (69A)	102동 (3호)	1층	1	620,250,000	246,890,000	867,140,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260,142,000
69.1800 (69B)	102동 (2호)	1층	1	614,830,000	215,310,000	830,140,000	83,014,000	83,014,000	83,014,000	83,014,000	83,014,000	83,014,000	83,014,000	249,042,000
		2층	1	614,830,000	234,310,000	849,140,000	84,914,000	84,914,000	84,914,000	84,914,000	84,914,000	84,914,000	84,914,000	254,742,000
		3층	1	614,830,000	252,310,000	867,140,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86,714,000	260,142,000
		4층	1	614,830,000	261,310,000	876,140,000	87,614,000	87,614,000	87,614,000	87,614,000	87,614,000	87,614,000	87,614,000	262,842,000
		5층	1	614,830,000	270,310,000	885,140,000	88,514,000	88,514,000	88,514,000	88,514,000	88,514,000	88,514,000	88,514,000	265,542,000
		6층	1	614,830,000	279,310,000	894,140,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268,242,000
		7층	1	614,830,000	279,310,000	894,140,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268,242,000
		8층	1	614,830,000	279,310,000	894,140,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268,242,000
		9층	1	614,830,000	279,310,000	894,140,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268,242,000
		10층	1	614,830,000	279,310,000	894,140,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89,414,000	268,242,000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택형(㎡)	050.8400A	050.6300B	050.9500C	059.6700A	059.6900B	059.9700C	069.7900A	069.1800B	**비고**
홍보관 등의 약식 표기	50A	50B	50C	59A	59B	59C	69A	69B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는 전 세대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형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함.
- 중도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4항 3호에 의거하여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 대출규제 대상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심사강화로 인한 대출은행 미선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 등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음.

Ⅱ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2년 이상(2018.10.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세대주가 아닌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시 2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지역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1.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추첨제 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베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베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 선정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미만의 가입기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2018.10.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투기과열지구)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0%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9">① 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d rowspan="9">-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9">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 rowspan="9">-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총점</td><td>84</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td></tr>
</table>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매매 등 처분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①호와 제②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상 : 처리일

③ 분양권등의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해당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⑨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함)

-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봄.
- 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무순위 사후접수시 청약불가)
- "계약취소 주택재공급" 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⑧「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일반공급 청약신청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전 반드시 서울특별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미만 거주 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2018.10.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2020.10.19.(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 원칙(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0.10.20.(화) (08:00~17:30)	
	2순위	서울특별시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0.10.21.(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8.10.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 청약가능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으로 접수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기타지역(1순위) 및 후순위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 ~ 17:30으로 변경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1순위 / 2순위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우선공급 적용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Ⅲ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20.10.27.(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와 동점까지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0.27.(화) ~ 2020.11.05.(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0.2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Ⅳ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 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유의사항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일반공급)	2020.10.29.(목) ~ 2020.11.06.(금) 9일간 10:00 ~ 16:00	당사 홍보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 래미안서초유니빌 상가 201호(서초동 1445-4) ☎ 1522-6620 / (우) 06720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동일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08.)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홍보관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O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국내거주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추가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O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O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O		위임장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홍보관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공급계약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0.11.09.(월)~ 2020.11.11.(수), 3일간, 10:00~16:00	홍보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 래미안서초유니빌 201호(서초동 1445-4)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의거 '해당 청약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 및 부양가족, 당첨사실 등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홍보관 비치) "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2020. 2. 21.부터 개정·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모두 해당).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본 공동주택의 관계관청(교육청, 인허가청 등)이 요청할 경우 해당 분양계약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O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O		계약금 입금증	본인	-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홍보관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수납 일체 불가함)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제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O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홍보관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금액	우리은행	1005-403-752778	낙원청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0.11.09.(월)~ 2020.11.11.(수)]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2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1020101홍길동' 으로 기재)

※ 당첨된 동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 착오입금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해당 납부 지정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개인의 사정(신용불량 거래자, 개인의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 및 대출취급기관의 방침(개인별 또는 세대별 제한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재외동포, 외국인 및 법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또한,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의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대출신청 시 중도금대출의 안정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제반비용(인지대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실행 이전에 계약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공급대금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타 대출취급기관의 담보대출로 대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대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중도금 대출 알선에 의하여 중도금을 납부한 계약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협약에 의거 계약자 개인정보, 계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접수가 가능함.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전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외),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20%)	중도금(20%)	잔 금(60%)
타입		계약시	2021.02.01	입주지정일
50A	1,281,000	250,000	250,000	781,000
50B	1,537,000	300,000	300,000	937,000
50C	1,490,000	290,000	290,000	910,000
59A	4,437,000	880,000	880,000	2,677,000
59B	4,347,000	860,000	860,000	2,627,000
59C	3,150,000	630,000	630,000	1,890,000
69A	2,856,000	570,000	570,000	1,716,000
69B	3,047,000	600,000	600,000	1,847,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후 통보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2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1020101홍길동' 으로 기재)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포함)

해당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50A, 50B, 50C	2대	선택1	거실+침실1(안방)	3,280,000	
	3대	선택2	거실+침실1(안방)+침실2	4,490,000	
59A, 59B, 59C	2대	선택1	거실+침실1(안방)	3,280,000	
	4대	선택2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5,800,000	
69A	2대	선택1	거실+침실1(안방)	3,280,000	
	4대	선택2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5,800,000	
69B	2대	선택1	거실+침실1(안방)	3,310,000	
	4대	선택2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5,830,000	

2) 추가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선택안	청정기 설치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	50A, 50B, 50C	선택1	2대	거실, 주방	1,420,000	자이에스앤디	
		선택2		거실, 침실1	1,585,000		
		선택3	3대	거실, 주방, 침실1	2,295,000		
		선택4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3,170,000		
	59A, 59B, 59C, 69A, 69B	선택1	2대	거실, 주방	1,420,000		
		선택2		거실, 침실1	1,585,000		
		선택3	3대	거실, 주방, 침실1	2,295,000		
		선택4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045,000		

※ 시스클라인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청정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환기덕트, 디퓨저,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및 컨트롤러 설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침실은 공간이 협소하여 천장형 공기청정기가 세로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선택시 거실 컨트롤러 1대로 거실 및 주방 통합제어 가능하며, 거실 컨트롤러는 기본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 침실 선택시 매립형 컨트롤러 (난방기능포함, 난방 컨트롤러 대체)를 침실별 각 1대씩 제공합니다.

2) 현관 중문(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50A	50B	50C	59A	59B	59C	69A	69B
중문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계약금(2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 인테리어 패키지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50A	50B	50C	59A	59B	59C	69A	69B
거실아트월 + 주방상판/벽체 + 침실1개소 붙박이장	3,380,000	3,370,000	3,280,000	3,170,000	3,170,000	3,570,000	4,190,000	4,828,600

* 69B 타입은 거실과 안방 사이 알파룸 설치비용 포함
* 인테리어 패키지는 발코니 미확장시에도 선택 가능합니다.

4)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

•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2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1020101홍길동' 으로 기재)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관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설치기준), 침실1(벽걸이형(액자형 설치 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변형 벽체 제거 및 변경 시 매립냉매배관 설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청정 전열교환 환기장치 옵션 선택 시 거실에 설치되는 룸컨트롤러에는 오염감지센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크기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슬라이딩 도어, 여닫이 도어는 기능 및 제품 특성상 도어와 복도 벽체, 바닥 마감재 사이에 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멀티형 실외기 설치를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기를 2단 설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미계약시 현관, 침실 등 칸막이 벽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목재문, 플라스틱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도어레버 등), 디지털도어록	각실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실 강재도어, 실외기 루버
② 바닥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타일), 발코니 수전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GAS배관
④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전동빨래건조대	천장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시설,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액세사리, 천장재(천장틀 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실바닥 및 벽타일, 배수구 커버	조적, 방수, 미장, 전기, 설비, 배관/배선
⑥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사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광파오븐, 주방액정TV 등)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 소화기 및 주방소화기 및 주방 배기덕트
⑦ 일반기구	신발장, 복도장, 드레스룸장(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파우더(화장대, 상판 및 거울포함)장, 반침장, 수납선반 및 기구(액세서리 포함)	-
⑧ 조명기구	부착형, 노출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기구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50A	50B	50C	59A	59B	59C	69A	69B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16,710,000	16,730,000	16,740,000	19,590,000	19,580,000	19,650,000	22,850,000	22,620,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3조 규정 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책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의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 (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Ⅶ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의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홍보관의 단지모형(색채, 단지 내·외부 단차, 조망, 인근 기반시설 간의 거리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모형물, 인쇄물,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홍보관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유상옵션 미선택 품목 및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주택은 2018.01.11.(목)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여 현재의 법적 기준(단열기준, 주차기준, 건축구조 및 소방 관련 내진설계 기준) 및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년도별 크기기준 등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고,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측벽세대와 측벽세대가 아닌 경우, 세대내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발코니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숙지하시기 바람.

Ⅷ 단지 여건 사항

▣ 단지 외부여건

- 본 상품의 홍보물은 2020년 0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변경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당해지역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주변에 건물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주변에 노후 건물이 다수 존재하여 재건축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건물인도 시 먼지,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6m 도로, 북측과 서측에는 4m 도로가 있으나 기존 건물들로 인하여 도로 실제 치수는 다를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내 인접건물과의 경계는 기존 담장 철거 가능 유무 및 담장공사로 인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도로 소음, 주변분양사업장,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사로 인해 보행로 경사 및 단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와 인접건물과의 경계에 담장 설치시 담장은 경계선상에서 단지 내부쪽으로 설치 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층에 인접하여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코어에는 DA 및 E/V가 설치되고,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다.
- 동절기시 주출입구 및 E/V홀은 눈으로 인한 미끄러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조경으로 인한 조망권 일부 방해 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쓰레기분리함설치로 일부 조망권 침해 및 악취가 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계단 지붕이 없어 계단실 바닥 물고임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한전선로 지중화 지역이므로 한전 공급 규정에 의거하여 단지 내에 한전 수전을 위한 패드 스위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한국전력 시행)

IX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사항
-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 및 흙막이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계약체결 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등의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공동주택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조경

- 보행출입구는 단지 동측 및 서측에 위치해 있으며, 동측 보행출입구는 계단을 통해서 지상층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로비는 보안장치에 의해 출입통제 됩니다.)
- 차량 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위치해 있으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단지내 비상차량(소방차 등) 동선은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홍보관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 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공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상가,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비상차량 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보관소는 지상(1개소)에 반영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및 조경계획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사다리차 진입불가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휴게공간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는 천장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구성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다른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준공 후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개별 설치할 예정으며 추후 입점자가 개별 설치하는 실외기로 인한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 차량 출입구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공 후 관리주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공동주택: 72대, 근린생활시설: 6대)는 78대로 세대당 1.0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4m로 일부 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은 비상차량을 제외한 주차공간이 없으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높이는 탑차 이용이 불가능 하며, 도로 경사로 인하여 일부 구간 도면치수 미확보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시 트렌치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바닥에 물청소, 빗물, 눈 등으로 인핸 물이 고이게 되면 하부층 천정에 크랙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로 인해 밀림 및 소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차량 이동시 바닥 충격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주동

- 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승강기 인승, 속도, 탑승위치)등은 사업시행인가(변경)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의 외벽마감은 화강석으로 마감될 예정(계단실 등 코어 외벽, 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석종,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각 층에 제연실(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에 엘리베이터 운용으로 인한 진동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별 위치 및 조경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홍보관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공동주택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공통>

- 비내력벽 마감은 실별에 따라 습식, 건식 또는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각 단위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층 단차로 인해 단열재 및 마감재, 내부 치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간섭이 되는 세대는 일부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등 가전제품은 시공완료 후 실측하여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지붕층 난간대 설치로 인해 바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문은 문틀과 문짝이 별도 제작이 되어 틈새가 일부 발생 할 수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종류가 다른 곳은 두께가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의 경우 장소에 따라 두께가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발코니의 경우 바닥 구배로 벽면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가구 문짝의 경우 바닥 및 천정 높이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가구, 주방가구, 목창호 시트지는 문선, 아트판, 문짝등 색상 및 무늬가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문짝의 경우 상호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질재 접하는 구간은 코킹이 마감입니다.
- 골조벽에 일부 수직, 수평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범위내)
- 노출되는 문선(휠라)의 경우 일부 수직, 수평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화장실 문짝이 손끼임 방지 적용 될 경우, 탈부착여부 선택 할 수 없음.
- PL창호 닫음시 창틀 흔들림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PL창호 개폐시 신규 제품이라 일부 부드럽지 않게 열릴 수 있습니다.
- 난방분배기 주변 마감이 일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및 걸레받이 틈새 및 노출면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상,하 피난사다리 설치로 층간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건장치는 없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가구형태나 위치가 상이하니 카탈로그 및 홍보관내 관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통합 분전반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창고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홍보관과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의 내부 구성, 도어의 위치 및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홍보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높이는 바닥재의 종류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대피공간 또는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의 출입문은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 및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평소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에 별도의 물건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일부세대(50A, 50B 등)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 경계벽이 설치되어있으며, 화재 및 비상시에 경계벽을 파괴하고 피난해야 하므로 물건 등을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계약 시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한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 및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에 설치되는 옥외공간(테라스)은 관리 및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생활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마감재>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홍보관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완충재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는 각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랍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가구 상,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창고장(일부세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홍보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흼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아트월 길이 및 위치, 벽체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CG, 카달로그 등 안내문을 확인 바랍니다.

<전기/설비>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실외기실 및 세탁실등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실외기실 및 세탁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 분전함, 세대 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또는 창고장 내부에 분전함, 통신 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직배기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인접세대로 인한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규격 및 개수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으로 적용되어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외부 공기 유입 및 배출용 후렉시블호스 등에 의해 거실 커텐박스 규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져는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배기구(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용, 형태 및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설비가 올라와 냄새 및 분진, 소음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 위치 및 근본적인 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각종 위생 및 가스배관, 덕트 등은 공용으로 사용되며, 기계실 등에 위치한 기계장비(소방시설 포함)들도 공용장비로 시공됩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 분	등 급
내진중요도 I	VII : 0.2039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 등급, I ~ VII)으로 표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만족
-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기준 만족
- 창면적비 기준 만족
-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기준 만족
- 창의 기밀성능 기준 만족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가목. 단열조치 준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따른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단열 조치 준수 나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따른 해당 바닥의 열저항 합계 기준 준수 다목. 방습층 설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따른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가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따른 지역별 설계용 외기조건 적용 나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다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고효율보일러 설치 라목. 고효율 전동기: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마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사용 바목. 절수형 설비 설치: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가목. 수변전설비 설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나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 준수 다목. 조명 설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효율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라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따른 대기전력차단장치를 거실, 침실, 주방 등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마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바목. 실별온도조절장치: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전기	통신감리비고
회사명	㈜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	㈜극동파워테크	㈜극동파워테크	㈜극동파워테크
감리금액	369,549,200원(VAT별도)	38,000,000원(VAT별도)	34,200,000원(VAT별도)	13,300,000원(VAT별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우측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 (단위:천원, VAT 포함)

항 목	금 액
1. 택지비	18,163,570
2. 직접공사비	3,895,600
3. 간접공사비	1,514,956
4. 설계비	108,196
5. 감리비	42,076
6. 부대비	312,565
7. 그밖의 비용	2,083,938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5항)

구 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	16,118,312,000 원	15,762,761,000 원

X 기타사항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0-101-0005200호	18,284,63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낙원청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110171-0083466
시공회사	자이에스앤디(주)	110111-1934557

▣ 홍보관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 래미안서초유니빌 201호(서초동 1445-4)

▣ 사이버 홍보관 : http://www.seocho-xirene.com

▣ 분양문의 : ☎ 1522-662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